

조선 초기 告身 追奪 및 還給에 관한 연구*

이승현**

목 차

- I. 序論
- II. 告身の 의의와 법적 성격
 - 1. 告身の 의의와 연혁
 - 2. 告身 追奪·還給의 성격
 - 3. 명예형적 성격
- III. 告身 追奪의 사례 분석
 - 1. 告身 追奪의 유형
 - 2. 告身 追奪의 예외사례
 - 3. 告身 追奪의 특수사례
- IV. 告身 還給의 사례 분석
 - 1. 告身 還給의 사례 유형
 - 2. 告身 還給에 대한 논쟁
- V. 결론

[국문 요약]

조선시대 문무관원에게 품계에 따라 수여한 임명장인 告身은, 追奪·還給 등의 처분을 통해 죄를 지은 관원을 징계하여 자격을 박탈하거나, 사면하여 회복시키는 과정과 상당한 관련이 있다. 明代《大明律》<名例> [文武官犯私罪] 條에서는 관원의 私罪에 대해 官品을 差等的으로 거뒀으며, 이 체계가 조선《經國大典》의 <刑典> [推斷] 條로 이어졌다. 조선에서 告身を 거두는 처분은 본래의 형벌에 대한 附加刑으로서의 성격과 관원의 자격을 박탈하거나 강등하는 징계별·명예형의 성격을 모두 갖추고 있었다.

조선왕조실록을 통해 告身 追奪을 유형화하면 토지·노비 문제, 贓汚罪, 綱常罪 등 다양한 유형을 징계하기 위해 관원의 告身を 거두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공신·종친이거나 사면 시기와 맞물려 추탈을 면한 사례도 있으며, 私罪에 국한하여 告身を 거두는 것이 원칙

* 이 글은 줄고, 『조선 초기 告身 追奪 및 還給에 관한 연구』(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18)의 일부를 발췌·수정한 것이다.

**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석사

이었음에도 불구하고 公罪에 대해서도 告身을 거두는 현상도 종종 발견된다. 告身 還給은 定例的 還給과 사면에 의한 還給으로 구분할 수 있다. 告身이 追奪된 관원은 대체로 2년 뒤에 敍用할 수 있도록 하였으므로 還給 역시 원칙적으로는 그에 준하여 이루어졌을 것으로 추정된다. 사면에 의한 非定例的인 還給은 왕실의 각종 경조사 및 자연재해로 인한 대사면, 그리고 실무적 판단에 따른 경우이다. 사면으로 인한 대규모 告身 還給의 빈도와 인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贓汚·綱常罪와 같은 중죄를 告身 還給의 배제사유로 삼는 문제를 두고 논의가 이뤄졌으며, 대체로 恤刑에 대해 공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告身 還給 그 자체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 제기도 이어졌다. 이는 조선 초기 告身 還給이 정치적 안정성 및 화합 도모라는 정치적·현실적인 필요성과, 엄정한 법질서 구현이라는 명분론의 지속적 인 긴장상태 하에서 이루어졌음을 뜻한다.

[주제어] 告身, 追奪, 還給, 懲戒, 赦免, 附加刑, 名譽刑

I. 序論

조선시대 관원에 대한 임명장 내지 辭令狀의 기능을 한 告身¹⁾의 경우 단순한 임명장이나 후손의 조상 行績 입증을 위한 근거로서의 가치 외에도, 관원 자격을 박탈하거나 되돌려주는 등의 기능이 있었으므로 자격증으로서의 성격도 있었다. 관직을 授與할 때 품계에 따라 告身을 지급하는 체계는 唐代에서 본격적으로 등장하여²⁾ 고려를 거쳐 조선시대까지 이어졌다.

다만 지금까지의 告身 관련 선행연구는 조선시대 告身の 형식상의 특징에 초점을 맞추었으므로, 告身の 追奪 및 還給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다룬 연구는 드물다.³⁾ 이 논문에서는 成宗朝까지의 告身 追奪 및 還給 사례를 분류

1) 告身을 비롯하여 본 논문에서 다루는 조선전기 관원·종친·내관 등에 대한 임명장에 대해서는 다양한 용어가 혼재되어 있다. 예컨대 조선 초기 실록 기록에서 임명장을 지칭하는 용어로 '告身'이나 '職牒'이 주로 쓰이곤 하지만, 드물게는 謝牒·官敎·敎牒·牒紙 등도 발견할 수 있다. 다만 『經國大典』〈禮典〉의 관원의 임명장 양식을 다룬 규정에서는 '告身式'으로 표현하고 있으므로, 본 논문에서는 조선시대 관원에 대한 임명문서 명칭을 告身으로 통일하여 서술토록 한다.

2) 『新唐書』卷50 志35 選舉志 下, "凡擇人之法有四：一曰身, 體貌豐偉……主者受旨而奉行焉, 謂之'奏受', 視品及流外, 則判補, 皆給以符, 謂之'告身'."

3) 告身の 성격과 종류, 발급 및 회수 절차에 대해서는 정구복의 연구에서 정리된 바 있다. (정구복, 『朝鮮朝의 告身(辭令狀) 檢討』, 『고문서연구』 9집(한국고문서학회, 1996. 10.); 『고문서 용어풀이 : 告身(告身牒·職牒·官敎·牒紙·空名告身牒·空名帖·敎旨·王旨·敎命·故牒)』, 『고문서연구』 22집(한국고문서학회, 2003. 2.). 한편 박재우는 謝牒이 관원 후보자의 署經 통과를 입증하는 문서였음을 주장하였지만(박재우, 「15세기 인사문서의 양식과 성격」, 『역사와 현실』 59, 한국역사

하고 그 특징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官員에 대한 ‘형벌 또는 징계 수단’으로서의 告身의 특성을 발견하고자 하며, 나아가 일종의 ‘赦免 수단’으로 告身이 인식된 사례도 조사하여, 告身의 법적 성격을 조명하고자 한다.

II. 告身の 의의와 법적 성격

1. 告身の 의의와 연혁

告身은 관원을 임명하는 용도로 쓰인 문서양식으로, 중국 唐代에서 그 유래를 찾을 수 있다. 『新唐書』卷50 志35 〈選舉志〉下에서는 인재 선발의 네 가지 기준으로 身言書判을 각기 설명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告身을 流品官에게 지급하는 符信으로 보았다.⁴⁾ 唐에서의 告身은 관원의 품계 및 직책 종류에 따라 冊授·制授·勅授告身⁵⁾ 등 다양하였다.

연구회, 2006. 3.; 『고려후기 인사행정과 인사문서에 대한 비판적 검토』, 『한국사연구』 162, 한국사연구회, 2013. 9.) 이에 대해 박준호·심영환은 謝牒이 그 자체로 관원 임명문서였으며 이것이 告身 및 署經 제도로 이어졌다고 반론하였다.(박준호, 『고려후기와 조선초기의 인사 문서 연구』, 『고문서연구』 31, 한국고문서학회, 2007. 8.; 심영환, 『변화와 정착-麗末鮮初의 朝謝文書』, 『한국고문서자료총서 1 : 변화와 정착-麗末鮮初의 朝謝文書』, 민속원, 2011. 10.) 한편 근래에는 유지영이 조선시대의 각종 임명문서를 임명방식의 직·간접성에 따라 정리한 바 있다.(유지영, 『朝鮮時代 任命文書 研究』,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4. 8.)

4) 『新唐書』卷50 志35 選舉志 下, “凡擇人之法有四：一曰身, 體貌豐偉……主者受旨而奉行焉, 謂之‘奏受’, 視品及流外, 則判補, 皆給以符, 謂之‘告身’.” 한편 『經國大典註解』에서도 告身に 대해 “告身：唐選舉志 授官而各給以符, 謂之告身(관직을 제수하고 각각 符信을 지급하는 것)”이라 설명하였는데 역시 비슷한 설명이다. 정궁식·田中俊光·김영석, 『譯註 經國大典註解』(한국법제연구원, 2009), 147면.

5) 唐의 告身은 시대에 따라 혼용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지만, 대체로 3품 이상의 高官은 冊授告身, 4~5품관은 制書를 통한 制授告身, 6품 이하는 奏授告身, 품계가 6품이면서도 職事는 5품 이상인 守職에 대해서는 勅授告身을 지급하였다. 심영환, 『高麗 景宗元年(975) 金傳告身 分析』, 『서지학보』 제31호(한국서지학회, 2007. 12), 92~94면. 한편 勅授告身に 대해서는 역시 심영환, 『古代東아시아 任命文書의 性格』, 『泰東古典研究』 제35집(한림대학교 태동고전연구소, 2015. 12), 69~76면에서 일본 및 고려의 임명문서와 비교하여 설명하였다.

종류	원본문서	텍스트
① ⁶⁾		<p>某曹 某年某月某日 奉 教具官某 爲某階某職者 年 月 日 判書臣 某 參判臣 某 參議臣 某 正郎臣 某 佐郎臣 某</p>
② ⁷⁾		<p>教旨 李禎爲奉列大夫知 韓山郡事兼勸農兵 馬團練副使者 正統二年 實 十月初六日</p>

【그림 1】 ① 《經國大典》〈禮典〉[文武官五品以下告身式] 條 규정(5품 이하 문무관리에 대한 告身 양식 규정이다.
 ② 세종 20년(1483년) 10월 李禎에게 수여된 告身(4품 이상 문무관리에 대한 告身)

告身과 관련된 규정은 중국의 唐律로부터 발견할 수 있다. 《唐律疏議》의 [以理去官]·[除名]·[官當]·[無官犯罪 有官事發] 條, 그리고 《唐六典》의 관원평가 관련 규정에서는 告身을 거둠으로서 관원의 자격이 박탈되는 경우

6) 사진은 《經國大典》〈禮典〉[文武官五品以下告身式] 條에 규정된 5품 이하 문무관원에 대한 告身 양식 규정이다.
 7) 세종 20년(1483년) 李禎 告身의 원본 사진은 왕실도서관 장서각 디지털 아카이브 데이터베이스 (<http://yoksa.aks.ac.kr/jsp/bb/VolView.jsp?mode=&page=&fcs=f&cd=ba1225&gb=1&bb10no=B00000008&bb20no=B00000008T&keywords=&rowcount=10>)에서 제공하는 조선 초기 告身 파일 중에서 특히 4품 이상 문무관원의 告身 형식을 잘 나타내는 사례를 선별하여 인용하였다.

를 전제하고 있다. 唐律을 기준으로 漢族의 문물을 복원하려 했던 明代의 법전인 《大明律》에서는, 앞선 唐律의 영향을 받아 〈名例〉 [文武官犯公罪] · [文武官犯私罪] 條⁸⁾에서 公 · 私罪에 따라 잘못을 저지른 관원의 품계를 차등적으로 거두도록 규정하였다. 조선에서도 태조의 즉위교서에서 관원의 公 · 私罪의 경우 《大明律》에 따라 謝牒을 거둘 것을 밝힌 이후에(自今京外刑決官, 凡公私罪犯, 必該《大明律》, 追奪宣勅者, 乃收謝貼)⁹⁾, 世宗朝에 다소간의 변동을 거쳐 《經國大典》〈刑典〉 [推斷] 條에 반영되었다.¹⁰⁾

【표 1】世宗朝 告身 追奪 방식의 변화 양상

杖數	세종 5년 1월 기준		세종 7년 12월 기준	《大明律》·《經國大典》
	私罪	公罪	私罪 ¹¹⁾	私罪
杖60	2等 回收	1等 回收	1等 回收	1等 回收
杖70	3等 回收	2等 回收	2等 回收	2等 回收
杖80	4等 回收	3等 回收	3等 回收	3等 回收
杖90	5等 回收	4等 回收	4等 回收	4等 回收
杖100	職牒 모두 回收	職牒 모두 回收	職牒 모두 回收	職牒 모두 回收

그 밖에도 《經國大典》에서는 《大明律》의 告身 追奪 체계에 기초하여 특수한 사안에 대해서 告身を 追奪하도록 보완규정을 명시하였다. [推斷] 條가 《大明律》 [文武官犯私罪] 條를 거의 그대로 수용한 확인규정이었다면, 《經國大典》에서 별도로 규정한 보완규정들은 축적된 수교를 토대로 특별히 告

8) 《大明律》〈名例〉第7條 [文武官犯公罪] 條, “【文武官犯公罪】 凡內外大小軍民衙門官吏犯公罪, 該答者 官收贖 吏每季類決 不必附過, 杖罪以上, 明立文案 每年一考 紀錄罪名, 九年一次 通考所犯杖數重輕 以憑黜陟.”

《大明律》〈名例律〉第8條 [文武官犯私罪] 條, “【文武官犯私罪】 凡文官犯私罪, 笞四十以下 附過還職, 五十解見任別敘, 杖六十降一等, 七十降二等, 八十降三等, 九十降四等 俱解見任, 流官於雜職內敘用 雜職於邊遠敘用, 杖一百者 罷職不敘, 若軍官有犯私罪, 該答者 附過收贖, 杖罪解見任 降等敘用, 該罷職不敘者 降充總旗, 該徒流者 照依地里遠近 發各衛充軍, 若建立事功 不次擢用, 若未入流品官及吏典 有犯私罪, 笞四十者 附過各還職役, 五十罷見役別敘, 杖罪並罷職役不敘.”

9) 《太祖實錄》卷1, 태조 1년(1392년) 7월 28일 정미 ③

10) 《經國大典》〈刑典〉「推斷」條, “…… 犯私罪杖六十者, 啓聞, 追奪告身一等, 〈每品分正 · 從爲等, 越等守職者, 曾經守職者, 非因罪犯未出謝者皆並計〉七十, 二等, 八十, 三等, 九十, 四等, 一百, 盡行追奪送吏 · 兵曹, 〈持告身逃匿者, 經赦亦奪〉.”

11) 《大明律》〈名例〉第7條 [文武官犯公罪] 條에서는 公罪에 대해 職牒을 거두지 않음.

身 追奪을 명시한 것이다. 예컨대 作況을 고의로 허위 보고한 수령의 告身을 거두고 영구히 서용하지 않도록 한 규정의 경우¹²⁾, 태종 9년(1409년) 6월에 농사 현황을 실수로 잘못 보고한 수령 안노생의 職牒을 거두는 과정에서 논의된 사항이 반영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¹³⁾

2. 告身 追奪 · 還給의 성격

1) 징계별적 성격

관원의 告身을 거두었던 조치는 해당 관원에 대한 징계별적 성격과 연관하여 접근할 수 있다. 물론 이 당시의 징계는 일정부분 관원의 위법행위에 대한 형사벌로서의 의미를 겸하고 있었으므로 공무원 관계의 질서유지를 위해 공무원의 의무 위반을 내부적으로 징계하는 오늘날 행정법상의 징계처분과 완전한 의미에서 일치하지 않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국가 차원에서 告身을 거둬으로써 해당 관원의 자격을 박탈하는 신분상의 불이익을 가한다는 특징에 있어서는, 국가가 공무원에 대해 사용자로서의 지위에서 신분상 불이익을 가하는 징계별적인 성격과 연결하여 살펴볼 수 있다.

세종 27년(1445년) 1월 告身이 追奪된 이정녕을 陵室 관련 사무 경험이 많다는 이유로¹⁴⁾ 관련 사무에 참여시키는 문제를 논의한 사례를 살펴보면, 告身 追奪이 관원 자격을 상실시키는 징계에 해당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논의과정에서 세종은 告身 追奪을 징계의 의미로 해석하였으며, 일단 이정녕을 참여시키되 末席에 앉히도록 하여 관원 신분이 아님을 분명히 하였다.¹⁵⁾

12) 《經國大典》〈戶典〉[收稅]條, “守令踏勘打量〈加耕田準旁田品等打量〉報觀察使, 觀察使覈實置簿後, 所報立案還授守令, 九月望前, 具數啓聞, 遣朝官, 憑考上項置簿及立案覆審, 啓定租稅 …… 守令則十負以上罷黜, 其知情妄冒者, 追奪告身, 永不敘用.”

13) 《太宗實錄》卷17, 태종 9년(1409년) 6월 3일 갑진 ①.

14) 실록에서 확인할 수 있는 이정녕의 陵室 관련 업무 참여 기록은 다음과 같다. 《世宗實錄》卷93, 세종 23년(1441년) 8월 25일 기축 ① ~ 8월 28일 임진 ①; 《世宗實錄》卷96, 세종 24년(1442년) 5월 16일 을해 ② ~ 5월 27일 병술 ①; 《世宗實錄》卷99, 세종 25년(1443년) 1월 22일 무인 ① ~ 4월 9일 갑오 ③

15) 《世宗實錄》卷107, 세종 27년(1445년) 1월 20일 갑오 ①, “… (전략) … 又曰: “李正寧曾掌陵室諸事, 近得罪收告身. 今方議陵室之制, 若還告身, 則受罪日淺, 有違於懲戒, 使之着笠與議, 亦未穩, 何

특히 다음 날 사헌부에서는 죄인을 의정부 논의에 참여시킬 수 없다는 논리로 극력 반대하였으며,¹⁶⁾ 이정녕의 告身은 4개월 뒤인 세종 27년(1445년) 5월에 이르러서야 가뭍으로 인한 대규모 사면을 계기로 還給되었다.¹⁷⁾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告身을 追奪당한 관원이 관원으로서의 자격도 인정받지 못하였음을 의미한다. 사헌부는 이정녕을 철저히 죄인으로 인식하여 비판하였으며, 세종 역시 그를 참여시킨 일이 통상적인 경우가 아님을 인정하였다. 종합하면 이정녕은 告身 追奪의 징계처분으로 인해 관원으로서의 자격을 인정받지 못한 상태에서, 관원이 아닌 陵室 문제에 관한 외부전문가로서 참여했다고 볼 수 있다. 나이가 당시 조정에서는 관원의 내부질서 및 기강을 위해 이정녕에게 가해졌던 신분상의 불이익 처분을 경솔하게 철회하는 상황을 피하고자 했음 역시 분명하다.

3. 명예형적 성격

告身 追奪 및 還給은 명예형적 측면에서도 분석할 필요가 있다. 현행 형법 제43·44조에서 규정한 자격상실·정지 등의 규정은 공무원 자격 및 선거·피선거권과 같은 명예·자격을 박탈하고 있는데, 전·현직 관원에 대한 告身 追奪은 이들의 관원 자격을 박탈하면서 동시에 장래의 관직 진출을 일정 수준에서 제한하는 효과를 발생시키므로 형법상 명예형과 비교하여 설명하여도 큰 무리는 없다.

다만 본 항목에서 살펴볼 부분은 특히 死者의 告身을 追奪 혹은 還給하는 문제이다. 亡人인 관원의 자격 박탈과 관련하여 죽은 관원 자신뿐만 아니라 그 자손이 조상인 관원에 대해 가지는 인격적 가치에 대한 추모의 감정, 그리고 蔭職과 같은 실질적인 혜택과 관련한 복잡한 문제가 도출된다. 따라서 사망한 관원의 告身을 거두거나 거두지 않는 문제에 대해서는, 당시의 논의

以處之?” 都承旨李承孫曰：“大抵雖無職者，若承命治事，則權着紗帽角帶，例也。” 上從之，遂傳旨禮曹：李正寧與議政府，同議陵室制度，權着紗帽角帶，從未隨參。”

16) 《世宗實錄》卷107, 세종 27년(1445년) 1월 21일 을미 ②.

17) 《世宗實錄》卷108, 세종 27년(1445년) 5월 11일 갑신 ②.

과정을 토대로 죽은 관원의 告身을 거두거나 돌려줌으로서 발생할 수 있는 명예의 박탈과 회복에 대한 과급효과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이는 현행 형법상의 명예형만으로는 설명하기 힘든 부분이다.

실록에서 발견할 수 있는 개별 사례에서는 死者의 告身을 거두지 않은 사례와¹⁸⁾, 死者임에도 불구하고 거둔 경우가 혼재되어 있다.¹⁹⁾ 상반되는 사례들을 종합하면 死者가 생존할 시 지은 죄의 輕重에 따라 死後 追奪 여부가 결정되었으며, 특히 綱常·不忠 등 중범죄를 위주로 死者의 告身 追奪이 이뤄졌음을 알 수 있다. 다만 죄질이 중함에도 불구하고 간혹 국왕의 판단에 따라 告身이 거둬지지 않거나, 다소 가벼운 죄에도 불구하고 거두는 경우가 있었다. 이는 死者의 명예를 깎아 내리는 효과를 부여하는 告身 追奪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필요한 죄의 輕重판단에 있어, 최종 결정권자인 국왕의 판단이 상당한 영향을 미쳤음을 의미한다.

한편 告身の 死後 還給 문제는 문종조에 명확한 원칙이 확립되기 이전에는 아래 도표와 같이 상반되는 사례가 뒤섞여 드러나는 혼란스러운 양상을 보이고 있다.

【표 2】 世宗朝 死者 告身 追奪에 대한 실록 기록 비교

死者 告身 還給 긍정	死者 告身 還給 부정
《世宗實錄》 卷30, 세종 7년(1425년) 11월 20일 을묘 ④	《世宗實錄》 卷37, 세종 9년(1427년) 8월 1일 병진 ②
《世宗實錄》 卷54, 세종 13년(1431년) 12월 26일 정사 ②	《世宗實錄》 卷69, 세종 17년(1435년) 8월 7일 병오 ④
《世宗實錄》 卷79, 세종 19년(1437년) 10월 12일 무진 ①	《世宗實錄》 卷120, 세종 30년(1448년) 6월 9일 계해 ②
《世宗實錄》 卷79, 세종 19년(1437년) 12월 9일 병인 ④	

18) 《太宗實錄》 卷14, 태종 7년(1407년) 11월 1일 신해 ②; 《太宗實錄》 卷14, 태종 7년(1407년) 11월 11일 신유 ①; 《太宗實錄》 卷18, 태종 9년(1409년) 10월 27일 을축 ②; 《太宗實錄》 卷18, 태종 9년(1409년) 12월 1일 무술 ③; 《世宗實錄》 卷87, 세종 21년(1439년) 11월 22일 병인 ③; 《世宗實錄》 卷87, 세종 21년(1439년) 11월 23일 정묘 ③; 《文宗實錄》 卷9, 문종 1년(1451년) 9월 21일 병진 ②.

19) 《世宗實錄》 卷15, 세종 4년(1422년) 1월 19일 정축 ④; 《世宗實錄》 卷124, 세종 31년(1449년) 5월 6일 을유 ④; 《文宗實錄》 卷9, 문종 1년(1451년) 8월 22일 정해 ①; 《世祖實錄》 卷4, 세조 2년(1456년) 7월 7일 갑술 ①.

世宗朝에는 死者 告身 還給 여부를 두고 의견의 불일치가 극명히 드러났다. 대표적으로 세종 30년(1448년) 6월 논의에서는 승정원을 중심으로 死者에게도 告身 還給 혜택을 주어야 한다는 입장이 제시되었다. 死者 還給 찬성론은 死者에 대한 告身 還給이 그 자손들의 四祖·神主에 기록되어 蔭職을 얻는 등의 혜택이 있으며, 만일 追奪된 때가 오래되었다더라도 사건의 경위를 파악할 수 있는 경우라면 마땅히 還給해야 하고, 같은 죄를 짓고도 죽은 사람은 告身을 還給받지 못하는 반면 생존한 사람은 還給받는 형평성의 문제를 근거로 내세웠다.²⁰⁾ 다만 이 당시에는 반대론이 더욱 우세하였으므로, 世宗朝에는 해당 인원의 사망 직후와 같이 죄의 輕重을 따지기 용이한 예외적인 사례에 한정하여 告身을 死後에 돌려주는데 그쳤다.²¹⁾

死者에 대한 告身 還給은 문종조에 최종적으로 허용되었다. 문종 1년(1451년) 11월 輪對에서는 세종 30년(1448년) 6월에 승지들이 제기하였던 死者 告身 還給의 근거들이 재차 제시되었다. 즉, 자손들의 蔭職 혜택·神主에 의 기록 문제, 같은 죄를 짓고 還給받은 다른 생존자들과의 형평성 문제 등을 감안하여 죽은 자의 告身을 還給하여도 좋을 것이라는 주장이었는데²²⁾, 결국 관철되었다.²³⁾ 이후 성종조까지의 사례는 문종 1년(1451년)에 결정된 기준을 그대로 따르고 있다.²⁴⁾ 정리하면 死者의 告身 還給은 죽은 관원의 追奪된 告身을 還給함으로써 명예를 회복하려는 명분상의 이유와, 그에 기인하여 자손들에게도 일정한 이익을 제공하는 실질적인 목적이 내재된 사안이었다.

20) 《世宗實錄》卷120, 세종 30년(1448년) 6월 9일 계해 ②, “…(전략) … “久遠難知者則已矣, 其所可知者, 論其輕重, 可給則給可也. 假若十人犯罪, 並收職牒, 一人身沒之後, 九人還受, 而一人未受, 則罪同罰異, 豈不深可惜也?” …(후략) …”

21) 《世宗實錄》卷121, 세종 30년(1448년) 8월 30일 계미 ②; 《世宗實錄》卷125, 세종 31년(1449년) 7월 10일 무자 ③.

22) 《文宗實錄》卷10, 문종 1년(1451년) 11월 11일 을사 ②.

23) 《文宗實錄》卷10, 문종 1년(1451년) 11월 12일 병오 ①; 《文宗實錄》卷10, 문종 1년(1451년) 11월 13일 정미 ①.

24) 《世祖實錄》卷28, 세조 8년(1462년) 4월 9일 갑술 ②; 《成宗實錄》卷124, 성종 11년(1480년) 12월 11일 병진 ③.

Ⅲ. 告身 追奪의 사례 분석

1. 告身 追奪의 유형

告身 追奪이 실행된 사례를 실록에서 찾아 유형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관료 계층의 경제적 기반인 노비·토지 관련 분쟁과 관련하여 소송 비리 및 기타 사유로 관원의 告身을 거두는 경우가 있었는데, 특히 太宗朝에 노비 신분과 관련하여 告身을 거두는 사례가 많이 발견된다.²⁵⁾ 부정하게 취득한 재물 전반 범죄²⁶⁾도 告身 追奪의 대상이었으며, 이는 部民告誣禁止法²⁷⁾²⁸⁾·지방관의 질적 저하·필요 이상의 징세²⁹⁾ 등의 사유와 관련이 있다.³⁰⁾ 그 외에 불충·불효 및 기타 성윤리 등 綱常罪나, 업무태만 및 기강해이, 誣告에 대해서도 告身 追奪이 있었다. 자백 중심의 피의자 신문방식 영향³¹⁾으로 지방관인 관원이나 종친이 함부로 형벌을 가해 사람을 죽게 만든 경우도 이에 해당하였는데, 이 경우에는 가해자-피해자 간 신분의 격차를 고려하여 告身 追奪과는 별개로 상당히 관대한 처분이 집행되었다.³²⁾³³⁾

25) 신소연, 「高麗後期 田民辨整 研究」(서울대학교 대학원 교육학박사학위논문, 2015. 2), 202~206면

26) 서정민, 「朝鮮初期 官吏의 汚職犯罪에 관한 研究 : 贓汚罪에 대한 논의를 중심으로」(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석사학위논문, 2004. 2), 10~14면.

27) 《世宗實錄》卷9, 세종 2년(1420년) 9월 13일 무인 ④.

28) 앞서 贓汚罪에 대해 연구한 서정민은 贓汚 범죄를 유발한 여러 요인 중 하나로 부민고소금지법의 시행을 제시한 바 있다(서정민, 앞의 논문, 72~81면). 다만 조선 전기 시행된 부민고소금지법에 대한 최근 연구에서는 고소금지의 기준·朝官의 파견 및 의견 수렴 등 실질적으로 수령에 대한 고소와 같은 효과를 발생시키는 다른 수단으로 인해 부민고소금지법이 의도한 효과를 내기 어려웠다는 주장도 제시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백승아, 「15·16세기 部民告誣禁止法の 추이와 지방통치」(서울대학교 대학원 국사학과 석사학위논문, 2014. 8), 29~43면.

29) 서정민, 앞의 논문, 72~88면

30) 서정민, 『세종, 부패사건에 휘말리다-조말생 너물사건의 재구성』(살림, 2008), 13~198면.

31) 조윤선, 「英祖代 남형·혹형 폐지 과정의 실태와 欽恤策에 대한 평가」, 『조선시대사학보』 48(조선시대사학회, 2009. 3), 214~218면.

32) 《世宗實錄》卷54, 세종 13년(1431년) 10월 4일 을미 ③.

33) 《成宗實錄》卷4, 성종 1년(1470년) 3월 18일 정유 ②.

2. 告身 追奪의 예외사례

1) 신분에 따른 免責

告身 追奪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관원이라도 공신 및 그 자손·종친의 신분 안에 있으면 告身 追奪을 면하기도 하였다.³⁴⁾ 이는 《大明律》의 八議에 대한 형사상의 예우를 받는 집단에 대한 규정과 관련이 있는데, 다만 그 죄가 중한 경우에는 追奪을 피하지 못하기도 하였다.³⁵⁾ 한편 특수한 사례로 明使臣에 벼슬 등을 청탁한 관원의 告身은 초창기에는 외교문제를 감안하여 거두지 않거나 돌려받았으나,³⁶⁾ 점차 외교적 마찰을 피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추후에 追奪하는 등의 현실적인 조처를 취하여 告身 발급 및 회수의 원칙을 지키고자 하였다.³⁷⁾

2) 사면 이전 犯罪에 대한 免責

한편 범죄행위의 시점이 사면 이전에 있었으므로 告身 追奪 징계를 면하는 경우도 존재하였는데, 重罪인 경우에는 대체로 행위시점과 무관하게 追奪하였다.³⁸⁾ 세종 13년(1431년) 11월에는 대사헌 오승이 사면 이전의 일에 대해서는 다루지 말 것을 요청하자 세종이 긍정적으로 반응하기도 했지만,³⁹⁾ 실제로는 개별 사안에 따라 告身을 거두거나⁴⁰⁾ 면제하는 등⁴¹⁾ 일관성을 보이지 못하였다. 赦宥 이전의 행위에 대한 告身 追奪 여부가 유동적인 첫 번째 원인은 개별

34) 《定宗實錄》卷1, 정종 1년(1399년) 6월 1일 경자 ④; 《太宗實錄》卷35, 태종 18년(1418년) 2월 29일 경술 ②; 《太宗實錄》卷28, 태종 14년(1414년) 8월 25일 을축 ①.

35) 《太宗實錄》卷19, 태종 10년(1410년) 4월 10일 병오 ④; 《成宗實錄》卷21, 성종 3년(1472년) 8월 12일 병자 ①.

36) 《世宗實錄》卷28, 세종 7년(1425년) 4월 19일 무오 ⑤; 《世宗實錄》卷61, 세종 15년(1433년) 11월 9일 무자 ②; 《文宗實錄》卷3, 문종 즉위년(1450년) 9월 7일 무신 ④.

37) 《世宗實錄》卷46, 세종 11년(1429년) 11월 13일 을묘 ①; 《成宗實錄》卷5, 성종 1년(1470년) 5월 24일 신축 ③.

38) 예를 들면 《成宗實錄》卷8, 성종 1년(1470년) 12월 26일 기사 ②.

39) 《世宗實錄》卷54, 세종 13년(1431년) 11월 5일 병인 ①.

40) 《太宗實錄》卷16, 태종 8년(1408년) 8월 15일 경인 ①; 《文宗實錄》卷1, 문종 즉위년(1450년) 3월 16일 경신 ⑤.

41) 《文宗實錄》卷5, 문종 1년(1451년) 1월 25일 을축 ③.

사건의 輕重이 다르기 때문이다. 세종 30년(1448년) 4월에는 赦宥에 해당하는 경우 職牒을 還給함이 옳다는 점을 전제하면서도, 奸盜·風俗과 관련된 일을 제외하면 輕重에 따라 주거나 주지 말도록⁴²⁾ 결정했다. 이는 赦宥를 시행하기에 적합지 않다고 개별적으로 판단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사면에도 불구하고 告身을 追奪하였음을 의미한다.

두 번째 원인으로서는 죄를 지은 관원이 赦宥 자체를 악용하여 告身을 지참하고 도망하였다가, 赦免이 있는 뒤 나타나 용서받음으로써 告身 追奪을 회피하려는 경우이다. 이미 세종 19년(1431년) 8월 사헌부가 이 문제를 제기하였는데⁴³⁾, 이후로는 赦宥 이전의 범죄임을 근거로 告身 追奪의 예외사항임을 항변할 수 없게 되었다.⁴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행히 赦宥를 바라고 告身을 빼들려 잠적하는’ 행태와, 이를 예외 없이 벌하는 조치는 성종조까지 이어지고 있다.⁴⁵⁾ 《經國大典》〈刑典〉[推斷]條에서 告身을 갖고 도망쳐 숨은 자에 대해 赦宥에도 불구하고 追奪토록 규정한 것도, 이러한 탈법적 상황을 방지하기 위함이다.⁴⁶⁾

42) 《世宗實錄》卷120, 세종 30년(1448년) 4월 24일 기묘 ④.

43) 《世宗實錄》卷78, 세종 19년(1431년) 8월 7일 갑자 ⑤, “…(진략) … “近來守令之貪饕, 相繼不絕, 盜取官物, 公然馱載, 不義之極, 人厭神怒, 終以敗露, 則輒齎告身逃匿, 自以爲得計. 苟脫天(綱), 窺伺赦宥, 僥倖免罪者有之, 攸司拘於赦條, 未得追論. 由是後之犯贓者, 爭效前轍, 如有舉劾, 隨即逃匿, 一經赦宥, 靦面無恥, 與士大夫同立于世, 得齒人類, 識者慨嘆, 非惟戾於懲惡之法, 實有違於勸俗之道. 自今犯贓在逃, 赦後出者, 罪名既成於赦前, 依刺字人例, 輒收職牒, 錄名于案, 永不敘用, 昭示後來, 以正士風.” 從之. 時贓吏逃匿者頗多, 知高城郡事李正文盜用官物, 事覺, 憲府劾之, 計贓二十五貫, 按律當杖流刺字, 未及論決, 正文逃匿, 移文中外, 搜捕未得, 故有是請也 … (후략) …”

44) 《世宗實錄》卷78, 세종 19년(1431년) 8월 15일 임신 ③; 《世宗實錄》卷113, 세종 28년(1440년) 9월 22일 정해 ①.

45) 《世宗實錄》卷86, 세종 21년(1433년) 9월 29일 갑술 ③; 《端宗實錄》卷1, 단종 즉위년(1452년) 6월 12일 계유 ①; 《世祖實錄》卷3, 세조 2년(1456년) 3월 17일 병술 ②; 《世祖實錄》卷7, 세조 3년(1457년) 5월 22일 갑신 ②; 《成宗實錄》卷117, 성종 11년(1480년) 5월 11일 경인 ⑥; 《成宗實錄》卷129, 성종 12년(1481년) 5월 11일 을유 ②; 《成宗實錄》卷220, 성종 19년(1488년) 9월 28일 무자 ①.

46) 《經國大典》〈刑典〉[推斷]條, “… 非因罪犯未出謝者皆並計, 持告身逃匿者, 經赦亦奪 …”

3. 告身 追奪의 특수사례

1) 관원 夫人의 爵牒 追奪

관원 및 종친의 부인에 대해서 《經國大典》〈吏典〉[外命婦]條에서는 남편의 품계에 따라 爵牒을 내리도록(封爵從夫職) 규정하였다. 때문에 관원·종친의 告身을 거둔 경우, 그 부인의 爵牒 역시 따라서 거두었다.⁴⁷⁾ 부인 자신의 죄로 인해 追奪된 경우는 물론이거니와,⁴⁸⁾ 남편인 官員이 職牒을 追奪당한 경우 그 부인의 爵牒도 거두게 하고, 도로 官員의 職牒을 還給할 때도 부인의 職牒 역시 還給토록 하였다.⁴⁹⁾

관원의 告身이 그 아내의 爵牒 追奪 여부에 종속되는 경우는 찾아보기 힘들다. 일례로 세종 22년(1440년) 6월에는 이맹균의 妻가 妾을 때려죽이자 이맹균의 告身은 “宗社에 관련된 것이 아닌데 대신의 告身을 거둘 순 없다”고 하여 追奪치 않고, 그 妻의 職牒만 收奪하였다.⁵⁰⁾ 물론 妻가 妾을 학대하는 등 가정을 다스리지 못했다는 이유로 남편인 관원의 告身을 거둔 사례가 존재하지만,⁵¹⁾ 이는 한 집안의 家長으로서 책임을 다 하지 못한 관원 본인의 책임을 물은 것이므로 부인의 爵牒을 거둔 것과 같이 볼 것은 아니다. 유교 신분제사회의 위계질서를 감안하면,⁵²⁾ 부인의 爵牒이 남편인 관원의 告身 追奪에 從屬적인 반면, 관원의 告身은 부인의 爵牒 追奪에 대해 상대적으로 독립적인 관계였음을 알 수 있다.

2) 署經의 未備에 따른 告身 追奪

관직 임명 후보자의 자격을 심사하는 署經制度는⁵³⁾ 국왕의 인사권을 제한

47) 태종조에 숙청된 외척 민무구·민무질 등의 경우, 그 부인까지 官敎·도장을 모두 거두고 남편을 따라 安置시켰음을 알 수 있다. 《太宗實錄》卷16, 태종 8년 10월 19일 기사 ①.

48) 《世宗實錄》卷50, 세종 12년(1430년) 12월 16일 임오 ①.

49) 《世宗實錄》卷54, 세종 13년(1431년) 10월 29일 경신 ①; 《端宗實錄》卷9, 단종 1년(1453년) 11월 28일 경진 ④.

50) 《世宗實錄》卷89, 세종 22년(1440년) 6월 18일 무자 ①.

51) 《成宗實錄》卷49, 성종 5년(1474년) 11월 1일 임자 ④.

52) 유승희, 『조선후기 형사법상의 젠더(gender) 인식과 여성 범죄의 실태』, 『조선시대사학보』 53집(조선시대사학회, 2010. 6), 260~264면.

하는 효과로 인해 수차례 변동이 있었다.⁵⁴⁾ 그 결과 罷經 제도의 잦은 변경이 변방에 근무하는 軍士의 告身 追奪 위기로 이어지는 문제점이 발생하였다.

왕권강화를 중시한 世祖朝에는 변방 근무에 종사하여 告身の 罷經 및 憑考가 어려운 軍士들을 배려하여,⁵⁵⁾ 먼저 告身を 지급한 뒤 罷經을 하여 祿俸을 받도록 하였다.⁵⁶⁾ 이후 성종 초기 臣權이 강성해지면서 罷經절차를 활성화시키면서 京外의 朝官·軍士의 告身を 기존의 것까지 다시금 자세히 조사(考査)하여 보고하도록 하였다.⁵⁷⁾ 그 결과 軍士들 중 告身を 명시한 기간에 제출하여 조사받지 못한 까닭에 追奪되는 부작용이 발생하였다.

특히 문제가 되었던 점은 검토를 위해 軍士가 告身 제출해야 할 기한이 2달로 다소 촉박하였던 점으로, 이 기간 중 考準하지 않은 군사 告身은 追奪도록 하였다.⁵⁸⁾ 그 결과 대조해야 할 이전 告身の 이력을 알기 어려운 사정, 피치 못할 사정으로 考準할 수 없는 경우에도 追奪하는 조치에 대한 반발이 뒤따랐다.⁵⁹⁾ 때문에 제도 시행 후 1년도 채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2달 이내에 告身を 罷經하지 못해 빼앗긴 자들에게 다시금 還給하였으며,⁶⁰⁾ 그나마도 禮曹에서 특별히 기한을 더 늘려 줄 것을 청한 결과⁶¹⁾ 告身 반납 기한이 200일로 연장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⁶²⁾ 그 결과 《經國大典》〈兵典〉[告身] 條의 규정은 평안·함경도 軍士의 경우 考準 등 검토를 위해 告身を 200일 내에 반납하지 않아야만 비로소 告身과 받은 祿俸을 도로 거두게 하였다.⁶³⁾ 이후 변방의 군사가 考準을 위한 告身 제출을 기한 내에 하지 못하여 追奪의 위기에 몰린 사례에서도 정상을 참

53) 《經國大典》〈吏典〉[告身] 條, ‘凡受職者, 告身五品以下, 考司憲府·司諫院署經給之. <議政府·吏兵曹·司憲府·司諫院·掌諫院·弘文館·春秋館·知製教·宗簿寺·侍講院 都事·守令, 考內外四祖及己身右痕咎與否罷經. 都摠府 宣傳官·部將同.>….’

54) 예컨대 《太宗實錄》卷26, 태종 13(1413년)년 10월 22일 무진 ④.

55) 《世祖實錄》卷2, 세조 1년(1455년) 11월 10일 신사 ⑥.

56) 《世祖實錄》卷39, 세조 12년(1466년) 7월 9일 무인 ①.

57) 《成宗實錄》卷1, 성종 즉위년(1469년) 12월 13일 임술 ③.

58) 《成宗實錄》卷1, 성종 즉위년(1469년) 12월 15일 갑자 ④.

59) 《成宗實錄》卷4, 성종 1년(1470년) 4월 14일 임술 ③.

60) 《成宗實錄》卷6, 성종 1년(1470년) 6월 27일 갑술 ④.

61) 《成宗實錄》卷10, 성종 2년(1471년) 5월 25일 정유 1②.

62) 《成宗實錄》卷47, 성종 5년(1474년) 9월 17일 기사 ②.

63) 《經國大典》〈兵典〉[告身] 條, ‘… 兩界軍士告身, 送于其道, 觀察使考前受告身分給, 受祿後, 滿二百日不納前受告身于司諫院者, 亦收告身徵祿.’

작하여 告身을 되돌려주게 하였는데,⁶⁴⁾ 결국 변방 군사가 도성까지 기한 내에 기존 告身을 제출하기 어려운 현실적인 사정을 감안하였기 때문이다.

IV. 告身 還給의 사례 분석

1. 告身 還給의 사례 유형

1) 定例的 還給과 환급기간 문제

朝廷에서는 告身이 追奪된 관원의 명단을 지속적으로 갱신하여 정리하였으며, 이를 還給 심의의 근거자료로 삼았다. 예컨대 태종 8년(1408년) 11월에는 죄인 중 석방하여 용서할 만한데도 계속해서 죄를 입는 점이 가엾다는 이유로 “各司에 갇힌 사람·職牒을 回收한 사람·各道에 付處한 사람”을 매월 초하루마다 기록하여 啓聞하며, 이를 恒式으로 삼도록 하였다.⁶⁵⁾ 世宗朝에는 宗簿寺로 하여금 貶黜되거나 告身을 빼앗긴 宗親을 四孟朔(1·4·7·10월)마다 죄를 받은 日月을 옮겨 적어 啓達하는 恒式을 마련하게 하였다.⁶⁶⁾ 《經國大典》〈吏典〉〔薦擧〕條에서는 罷職된 자와 더불어 告身을 回收당한 文·武官에 대해 매년 6·12월에 그 罪名이 기록된 명단을 왕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하였다.⁶⁷⁾

정례적 告身 還給과 관련하여 특히 살필 부분은 告身 還給에 확정된 기한이 존재하였는지의 문제이며, 특히 ‘2年설’이 합당한 것인지에 관한 것이다. 《經國大典》〈吏典〉〔考課〕條에서는 평가 결과에 따라 告身이 追奪된 관원

64) 《成宗實錄》卷229, 성종 20년(1489년) 6월 18일 을사 ②, “… (전략) … 其時臣遠在西塞, 家無子壻, 唯妻獨在, 微劣婦人, 豈識科程? 據其法則雖若有罪, 原其情則在所當恕. 官差督納, 辦出無地, 盡賣弓刀, 尙不能給. … (중략) … 乞霈洪澤, 以救十口倒懸之急.” 命議于承政院. 金克儉·韓健·曹克治·安瑠·洪興·朴楣議: “賢孫之訴雖若可矜, 《大典》之法不可搖動.” 傳曰: “貧寒武士追徵祿俸, 亦可矜憐, 今宜從權特給其祿, 勿收告身.”

65) 《太宗實錄》卷16, 태종 8년(1408년) 11월 27일 신미 ①.

66) 《世宗實錄》卷103, 세종 26년(1444년) 2월 15일 을미 ①.

67) 《經國大典》〈吏典〉〔薦擧〕條, “…… 凡收告身及罷職者, 每冬·夏季月 具罪名 啓聞〈兵曹同〉.”

은 2년 후에 敍用토록 규정하고 있다.⁶⁸⁾ ‘敍用’과 ‘告身の 還給’은 엄연히 별개의 개념이며, 실제 사례에서도 告身 還給과 敍用은 각기 별개의 시기에 이뤄지고 있다.⁶⁹⁾ 그럼에도 정례적인 告身 還給의 기간을 2년으로 추정하는 이유는, 告身を 돌려받는 것이 敍用の 선결요건이었기 때문이다. 즉, 告身 還給을 통해 官界에 복귀할 수 있는 자격이 회복되어 敍用될 기회를 얻었을 것이므로, 敍用이 告身이 追奪된 지 2년 뒤에 가능하도록 규정하였다면 적어도 告身 還給도 비슷한 시기에 이루어졌다고 추론할 수 있다.

2) 비정례적 還給

(1) 王室 一員의 慶弔事

조선에서는 明으로부터 詔勅·告命을 받거나 왕실 내외의 冠婚喪祭 등을 기념 혹은 추모하기 위해 사면령을 단행하였다. 이러한 사면의 목적은 죄인의 前科를 蕩滌하고 사회에 복귀시키기 위함인데, 정치적인 화합과 갈등해소를 목적으로 하는 오늘날의 사면제도와 그 취지가 비슷하다.

조선에서는 왕실에 경축할 만한 일이 있었을 경우 시행하는 대대적인 사면의 외중에 告身 還給이 이루어졌다. 선왕의 승하로 왕위가 계승된 경우 통상적으로 즉위에 맞추어 사면을 감행하였는데,⁷⁰⁾ 조선의 경우 明의 冊封을 받는 체후국의 위치에 있었으므로 明의 정식 승인에 해당하는 告命 도착 이후에도 별도로 告身 還給을 포함한 사면을 단행하였다.⁷¹⁾ 그 밖에도 왕실

68) 《經國大典》〈吏典〉[考課]條, “... (전략) ... 褒貶居下等及犯私罪罷職者, 經二年乃敘 (議親·功臣居下等者, 經一年. 堂上官 不在此限. 收告身還受者 亦以罷職日始計.) 兵曹同.”

69) 成宗朝 관원이었던 오백장의 告身 追奪 및 敍用·告身 還給의 시기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i) 罪狀 발각 : 《成宗實錄》卷16, 성종 3년(1472년) 3월 7일 계묘 ⑥, (ii) 告身 追奪 : 《成宗實錄》卷21, 성종 3년(1472년) 8월 12일 병자 ①, (iii) 告身 還給 : 《成宗實錄》卷24, 성종 3년(1472년) 11월 11일 계묘 ②, (iv) 官爵 계수 : 《成宗實錄》卷27, 성종 4년(1473년) 2월 7일 무진 ⑤ (v) 敍用 : 《成宗實錄》卷27, 성종 4년(1473년) 2월 7일 무진 ⑤.

70) 확인 가능한 즉위 직후의 告身 還給이 명시된 사면 기록은 문종(《文宗實錄》卷1, 문종 즉위년(1450년) 2월 22일 정유 ⑥), 성종(《成宗實錄》卷1, 성종 즉위년(1469년) 11월 28일 무신 ①)조의 기록인데, 이외에도 명시하지는 않았으나 매 왕의 즉위 시 告身 還給까지 포함하는 사면이 있었을 것이다.

71) 확인 가능한 告命·冊封 관련 告身 還給이 명시된 사면 기록은 다음과 같다. 문종(《文宗實錄》 권5, 문종

종친의 탄신을 기념하거나,⁷²⁾ 寺刹에 상서로운 기운을 발견하였다는 등의 이유로도 告身の 還給이 이루어졌다.⁷³⁾⁷⁴⁾

왕이나 중전·대비·세자 등의 漕유를 기원하며 사면을 감행한 경우는, 자연재해를 당하여 사면을 실시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통치자의 德이나 刑獄 처리의 불합리로 인한 冤抑을 달래기 위함이었다.⁷⁵⁾ 세종 28년(1446년) 3월 소헌왕후의 漕유를 기원하며 職牒을 돌려주는 등 사면 조치를 단행한 경우와 성종 5년(1474년) 4월에는 成宗妃의 漕유를 기원하며 42명의 告身을 돌려준 것⁷⁶⁾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2) 자연재해에 따른 민심 수습책

자연재해가 발생했을 때 그 원인을 군주의 덕망과 欽恤 부족에 따른 결과로 간주하고 죄인을 용서함으로서 冤抑한 사정을 수습하려는 차원에서 告身을 還給하는 경우도 존재하였다. 이는 통상적인 관점에서는 현대의 사면제도와는 차이가 있으며,⁷⁷⁾ 기후현상과 군주의 통치를 연관하여 해석하는 동양 전통의 ‘災異觀’과 관련이 깊다.⁷⁸⁾ 이러한 입장은 心性의 수련을 더욱 중시한 성리학과도 대조된다.⁷⁹⁾ 조선 초기 자연재해로 인한 告身 還給도 災異觀

1년(1451년) 1월 29일 기사 ①·단종(《端宗實錄》卷3, 단종 즉위년(1452년) 윤9월 19일 무인 ⑥).

72) 《世宗實錄》卷12, 세종 3년(1421년) 5월 16일 정축 ④; 《成宗實錄》卷115, 성종 11년(1480년) 3월 14일 갑오 ②; 《成宗實錄》卷183, 성종 16년(1485년) 9월 8일 병진 ④; 《成宗實錄》卷73, 성종 7년(1476년) 11월 29일 기사 ⑤.

73) 《世祖實錄》卷34, 세조 10년(1464년) 9월 25일 을해 ①; 《世祖實錄》卷34, 세조 10년(1464년) 10월 10일 경인 ③; 《世祖實錄》卷36, 세조 11년(1465년) 5월 6일 임자 ①; 《睿宗實錄》卷1, 예종 즉위년(1468년) 10월 23일 기유 ②.

74) 김종명, 『세조의 불교관과 치국책』, 『한국불교학』 58호(한국불교학회, 2010. 11), 132~144면; 이정주, 『世祖代 후반기의 불교적 祥瑞와 恩典』, 『민족문화연구』 44호(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2006. 6), 247~261면.

75) 유성국, 앞의 논문, 90~95면.

76) 《世宗實錄》卷111, 세종 28년(1446년) 3월 19일 병술 ①; 《成宗實錄》卷41, 성종 5년(1474년) 4월 14일 무진 ③.

77) 유성국, 『유교적 전통사회의 사면제도에 관한 연구』(연세대학교 대학원 법학박사학위논문, 1997. 2), 36~39면.

78) 유성국, 앞의 논문, 117~120면.

79) 이상호, 『태종대 가뭄 대처 양상에 드러난 유학적 사유 : 『태종실록』의 가뭄 관련 기사와 제이관을 중심으로』, 『국학연구』 23호(한국국학진흥원, 2013. 12), 533~539면.

에 따른 조치였다. 세종 9년(1427년) 6월의 가뭄 대책 논의에서는 《文獻通考》⁸⁰⁾의 가뭄 대책 부분⁸¹⁾을 토대로 억울한 죄수를 구제하는 정당성을 제기한 결과 告身의 대량 還給으로까지 이어졌다.⁸²⁾

실록에서 告身 還給 수혜자를 항상 명확히 밝히지는 않았으므로 정확한 수효 파악에는 어려움이 있지만, 대체로 성종조까지 지속적으로 증가추세에 있었던 것만큼은 분명하다. 예를 들어 성종 21년(1490년) 7월에는 가뭄과 더불어 사람이 벼락에 맞는 일이 벌어지자 성종조까지 기록된 인원으로는 가장 많은 689명에 달하는 인원의 告身을 還給하기도 하였다.⁸³⁾ 다만 성종을 비롯한 조선의 위정자들은 실상으로는 자연재해와 告身을 돌려주는 일이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으며, 민심 수습을 위한 필요최소한의 수준을 넘어선 과도한 告身 還給이 야기할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간간히 드러내기도 했다.⁸⁴⁾

(3) 정치적 필요에 따른 還給

조선의 경우 건국 초부터 성종조에 이르기까지 수차례의 정치적 변동이 존재하였으며, 이 과정에 연루되어 告身을 追奪당한 경우도 찾아볼 수 있다.⁸⁵⁾ 다만 그러한 혼란기를 수습한 뒤에는 사면 조치를 단행하여 정치적

80) 1319년 馬端臨이 唐代 杜佑의 《通典》을 토대로 간행하였으며, 上古時代부터 宋代까지의 토지·학교·인제선발·제례·형정 등 중국 문물에 대한 책으로 총 348권을 구성되어 있다. 《通典》·《通志》와 더불어 ‘三通’으로 불리며, 앞선 두 저서와 달리 宋代의 현황도 반영되었다는 것이 특징이다.

81) 《文獻通考》卷七十七, 〈郊社〉考十, “…大同五年, 又築雩壇於籍田兆內。四月後旱, 則祈雨, 行七事一、理冤獄及失職者; 二、賑孤寡獨; 三、省徭輕賦; 四、舉進賢良; 五、黜退貪邪; 六、命會男女, 恤怨曠; 七、徹膳羞, 施樂縣而不作 …”

82) 《世宗實錄》卷36, 세종 9년(1427년) 6월 9일 병인 ②.

83) 《成宗實錄》卷242, 성종 21년(1490년) 7월 7일 정사 ②.

84) 《成宗實錄》卷130, 성종 12년(1481년) 6월 22일 을축 ①, “…(전략) … 升卿曰: “大赦時收職牒者, 不得蒙恩澤, 并磨鍊還給何如?” 上曰: “雨不雨, 非關於還職牒也.” … (후략) …”

85) 《太宗實錄》卷16, 태종 8년(1408년) 7월 20일 병인 ①에서는 당시 죄를 입어 탄핵받은 민씨 형제를 敬差官으로 파견되어 가는 도중에 만나 본 건 判禮賓寺事 위층의 職牒을 거두고 덕산에 付處하였다고 서술하였다. 《端宗實錄》 권8, 단종 1년(1453년) 10월 17일 경자 ②에서는 癸酉靖難과 관련된 인평대군 측 인사들에 대한 告身 追奪이 단행되었으며, 《端宗實錄》卷8, 단종 1년(1453년) 10월 24일 정미 ③에서는 癸酉靖難에 연루되어 이미 安置·定屬된 죄인의 告身도 아울러 거두도록 하여 철저한 숙청이 이루어졌음을 파악할 수 있다.

로 배제된 관원 및 그에 연좌된 이들을 용서하였는데, 앞서 사회적 갈등을 정치적으로 해소·융합하는 일반사면의 목적에 비추어 보면 그 의도는 분명하다. 예컨대 太祖朝에는 우현보 등 조선 건국에 반대했던 세력에 대한 還給이,⁸⁶⁾ 太宗-世宗朝에 걸쳐서는 실각당한 태조와 집권한 태종 父子의 권력다툼으로 조선왕실에서 민감한 사안이었던⁸⁷⁾ 조사의의 난 관련자에 대한 告身 還給이 이뤄지고 있다.⁸⁸⁾ 세조-성종조 기간에는 집권세력의 급격한 교체가 있었던 癸酉靖難 연루자들에 대한 還給⁸⁹⁾이 이뤄졌는데, 이 역시 정치적 갈등의 봉합 차원에서 해석할 수 있다.

(4) 전문직 고려에 따른 還給

조선 초기에는 전문 분야에 종사하는 관원을 공무 등의 사유로 필요로 할 경우에는 통상적인 경우보다 단기간에 告身을 還給하는 경우가 있었다. 성종 조까지의 사례를 종합하면, 무관·역관·諫官 등 전문 분야에 필요하거나 국가의 통치이념에 부합하기 위하여 還給의 혜택을 베풀었음을 알 수 있다.

무관의 경우 조선 초기 4군 6진 개척 및 여진·왜구의 거듭된 침입으로 항시 수요가 발생하였으므로, 무관이 죄를 지어 告身이 거둬진 상태일 때 단기간에 還給하여 敍用함으로써 변경 방어를 위한 무관을 지속적으로 확보하려는 시도를 하였다.⁹⁰⁾ 심지어 성종 13년(1482년) 윤8월에 이르면 告身을 追奪당한 인원 중 자원자에 한정하여 告身 還給을 대가로 변방에 赴防토록 결정하기에 이르는데⁹¹⁾, ‘국경 방어’라는 현실적인 필요성을 감안하여 告身 追奪 및 還給에서의 예외적인 적용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그 밖에도 譯官,⁹²⁾ 承政院의 인사 실책에 대해서도⁹³⁾ 역시 업무 공백을 최

86) 《太祖實錄》卷14, 태조 7년(1398년) 5월 26일 임신 ②.

87) 안준희, 「朝鮮初期 太宗의 執權過程과 趙思義의 亂」(한국의국외대학교 대학원 사학과 석사학위논문, 1993. 2), 25~51면.

88) 《世宗實錄》卷76, 세종 19년(1437년) 3월 24일 갑인 ②.

89) 예를 들면 《睿宗實錄》卷4, 예종 1년(1469년) 3월 19일 계묘 ②.

90) 《世宗實錄》卷60, 세종 15년(1433년) 5월 26일 무인 ②; 《世宗實錄》卷65, 세종 16년(1434년) 9월 25일 기해 ①; 《文宗實錄》卷1, 문종 즉위년(1450년) 4월 20일 계사 ①.

91) 《成宗實錄》卷145, 성종 13년(1482년) 윤8월 15일 신사 ③.

92) 《世宗實錄》卷85, 세종 21년(1439년) 4월 20일 정유 ⑧; 《世宗實錄》卷85, 세종 21년(1439년)

소화하기 위해 훨씬 단기간에 告身을 돌려주거나 아예 追奪을 하지 않았으며, 臺諫의 언론활동 과정에서 追奪된 告身도 단기간에 告身 還給이 이뤄졌다.⁹⁴⁾

2. 告身 還給에 대한 논쟁

1) 告身 還給 배제사유의 변동

【표 3】 조선 초기 告身 還給 배제사유 범위 관련 주요 실록 기사

순번	실록기사	還給 배제범위
1	태종 16년(1416년) 5월 20일 신해 ①	十惡
2	태종 18년(1418년) 6월 22일 신축 ⑧	不忠, 不敬
3	세종 5년(1423년) 4월 28일 무인 ②	無
4	세종 25년(1443년) 7월 8일 신유 ②	綱常, 贓汚(還給 조처 자체를 세종이 거부)
5	세종 30년(1448년) 4월 24일 기묘 ④	奸盜, 風俗 관련 죄 및 기타 重罪
6	문종 즉위(1450년) 2월 22일 정유 ⑥	奸詐·贓汚 중 정상참작 불가능한 경우, 正妻 遺棄, 壓良爲賤으로 인한 永不敘用
7	단종 즉위(1452년) 윤9월 19일 무인 ⑥	無(綱常·贓汚罪도 還給받음)
8	세조 3년(1457년) 1월 15일 경진 ②	重罪(구체적 언급 없음)
9	세조 10년(1464년) 6월 20일 임인 ②	徒流刑으로 安置·付處·充軍된 경우
10	세조 10년(1464년) 10월 10일 경인 ③	無
11	세조 11년(1465년) 5월 6일 임자 ①	重罪(구체적 언급 없음)
12	성종 15년(1484년) 11월 30일 계축 ②	社稷 관련, 綱常, 奸盜, 贓汚
13	성종 21년(1490년) 7월 2일 임자 ③	綱常, 贓汚

國初에는 추상적이거나 포괄적인 배제기준이 존재하였으나, 세종조를 기점으로 보다 구체적인 告身 還給 배제기준이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물론 단종-세조 시기에는 대체로 國初와 같은 추상적인 기준으로 회귀하거나 심지어 모든 관원에 대한 예외 없는 還給이 시행되었지만, 성종조에는 다시금 綱

4월 29일 병오 ①.

93) 《成宗實錄》卷128, 성종 12년(1481년) 4월 7일 신해 ④.

94) 《文宗實錄》卷2, 문종 즉위년(1450년) 7월 17일 기미 ④; 《文宗實錄》卷2, 문종 즉위년(1450년) 7월 19일 신유 ①; 《文宗實錄》卷2, 문종 즉위년(1450년) 7월 22일 갑자 ④; 《文宗實錄》卷3, 문종 즉위년(1450년) 9월 22일 계해 ②; 《成宗實錄》卷215, 성종 19년(1488년) 5월 7일 경오 ④.

常·贓汚罪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기준을 적용하였다.

2) 贓汚·綱常罪에 대한 告身 還給 배제 논의

贓汚·綱常罪는 각각 관료계층의 도덕적 해이와 국가이념으로서의 유교질서 붕괴를 초래할 수 있는 중범죄였음에도 불구하고, 綱常·贓汚罪에 연루된 관원들이 예외적으로 還給 대상에 포함되기도 하였다. 때문에 이들 범죄를 용서할 수 없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성종조에는 贓吏를 告身 還給의 대상에 포함시킬 것인지와, 正妻에 대한 疏薄을 告身の 還給을 배제시키는 綱常罪로 간주할 것인지의 문제가 모두 논의되었다.

성종 12년(1481년) 1월에 시작된 贓吏의 還給 허용 논의는 贓汚罪를 엄히 처벌해야 한다는 원칙론과 이미 처벌이 중하니 告身은 돌려줘도 무방하다는 관용론이 대립한 끝에, 성종이 원칙론을 선택하였다.⁹⁵⁾

綱常罪의 경우 세부적으로 어떤 범죄를 ‘告身 還給이 불가능한’ 綱常罪의 범주에 포함시킬 것인가가 문제시되었으며, 특히 正妻를 疏薄한 잘못을 綱常罪로 보아 마찬가지로 還給의 배제사유로 인정할 것인지를 두고 논란이 있었다. 문종 즉위년 2월에 이미 正妻 疏薄을 還給 배제 사유로 보지 않도록 하였지만, 이후에도 正妻를 홀대하고妾만 아끼거나 娼妓와 國喪 중에 간통하는 등의 추문이 성종조까지도 계속되었으므로 논의가 불가피했다.

성종 15년(1484년) 12월의 논의에서 성종은 疏薄을 告身 還給의 배제 사유에 포함시킬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였는데, 이는 승정원·사헌부의 입장과 대비되는 것이었다.⁹⁶⁾ 5일 뒤 正妻에 대한 疏薄을 毆打한 경우와 아울러 綱常罪에 해당하는지를 대신들과 다시 논의하였을 때에도 의견이 분분하였지만, 결국 疏薄 자체를 綱常罪로 인식하되 상대적으로 가벼운 죄로 보아 還給 대상자에 포함시키기로 하였다.⁹⁷⁾ 조선 전기 士族 부녀의 간통죄 처벌은 士族女로서 정절을 강요하는 사회 분위기가 점차 확산됨에 따라 사대부의 그것

95) 《成宗實錄》卷125, 성종 12년(1481년) 1월 5일 경진 ⑥; 《成宗實錄》卷125, 성종 12년(1481년) 1월 11일 병술 ⑤; 《成宗實錄》卷125, 성종 12년(1481년) 1월 16일 신묘 ②.

96) 《成宗實錄》卷173, 성종 15년(1484년) 12월 9일 임술 ①.

97) 《成宗實錄》卷173, 성종 15년(1484년) 12월 14일 정묘 ②.

에 비해 더욱 무거워졌으며,⁹⁸⁾ 이러한 성차별적인 당대의 분위기가 士族 남성 正妻 疏薄을 還給 배제사유에서 탈락시키는 데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보인다.

3) 告身 還給의 필요성에 대한 당대의 인식과 異論

조선 초기 빈번한 還給 조치는 엄정한 법 집행과 징계의 효과를 감소시킨다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했다. 세종 27년(1445년) 5월 심한 가뭄으로 사면을 검토할 때 세종은 ‘재변이 닥칠 때마다 赦免하면 국가에서 악함을 징계하는 법이 엄하지 못해’ 생길 수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였다.⁹⁹⁾ 3년 뒤인 세종 30년(1448년) 5월 역시 가뭄을 맞아 告身을 還給하는 문제를 두고서도 세종은 비슷한 고민을 토로한 바 있다.¹⁰⁰⁾

문종 1년(1451년) 1월 明으로부터 告命을 받은 기념으로 대사면을 단행한 것에 대해 史官은 ‘前年에 이미 즉위하여 사면하였고, 이제 또 사면을 하는데, 즉위하였다는 이유로 加資를 지급하는 것은 전례에 없던 일인데도 갑자기 시행하니 식자들이 이를 나무랐다고 서술하여 사면행위 자체의 남발에 대해 비판적으로 평가하였다.¹⁰¹⁾ 史官의 비판적인 견해는 告命을 받은 기념으로 告身 還給과 加資 지급 등의 대사면을 단행한 단종 즉위년(1452년) 윤9월에도 드러나는데, 마찬가지로 특별히 은혜를 베풀만한 경사가 있는 것도 아닌데 告命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사면을 베푸는 것이 합당한가에 대한 의문 제기이다.¹⁰²⁾

성종 3년(1472년) 5월에는 장마로 인해 연이어 죄수 석방·京外從便·告身 還給 등의 조치가 있었는데,¹⁰³⁾ 2개월 뒤인 성종 3년 7월 經筵에서 집의

98) 장병인, 『조선전기 훈인제와 성차별』(일지사, 1997), 304-307면

99) 《世宗實錄》卷108, 세종 27년(1445년) 5월 11일 갑신 ②.

100) 《世宗實錄》卷120, 세종 30년(1448년) 5월 12일 병신 ②, “… (전략) … 其三, 刑獄之事, 有司固守法度, 君上務從寬厚, 恩自上出, 是固然矣. 故近年以來, 有司所讞, 予常未減, 不依重典. 且爲君之道, 以不失信爲貴, 故赦後追奪告身, 必不得已而後爲之, 不敢輕舉, 但今國家待大臣甚優, 雖已罷職, 儀章如舊, 腰金冠玉, 固自若也. 大臣有大罪者, 輕給朝謝, 無乃不可乎? 其亦何以處之? … (후략) ….”

101) 《文宗實錄》卷5, 문종 1년(1451년) 1월 26일 병인 ①.

102) 《端宗實錄》卷3, 단종 즉위년(1452년) 윤9월 19일 무인 2·⑥.

103) 《成宗實錄》卷18, 성종 3년(1472년) 5월 24일 경신 ②.

임사홍이 당시의 赦免·疏決이 너무 관대하여 重罪人이 從便·告身還給·復職 등의 은혜를 입었다는 비판을 가했다. 특히 임사홍은 ‘再變이 발생하는 것은 항상 형벌이 적당하지 않기 때문’이며, 지나치게 관대하게 용서한 사례를 해당 인원을 열거하며 관대한 처분의 부당함을 주장하였다. 덧붙여 그 결과로 ‘죄 지은 사람은 좋아하지만 人心·天心이 따르지 않을 것이며’, 자연재해로 인해 사면을 베푸는 당대의 행위 자체를 ‘근본적인 대책이 없이 임시변통으로 은혜를 베푸는 것으로 아름답지 못한 일’이라고까지 했다.¹⁰⁴⁾ 이러한 견해는 가뭄 등 천재지변이 끊이지 않았던 성종 17년(1486년) 3월,¹⁰⁵⁾ 성종 24년(1493년) 10월에도¹⁰⁶⁾ 등장한다.

告身 還給에 대한 비판적인 견해를 종합하면, 告身 還給과 같은 조치가 철저한 형벌의 시행을 가로막으며 風俗을 어지럽힐 수 있다는 의견이 일관되게 제시되었다. 비록 성리학적 사회구조에서 恤刑을 강조한 조선 사회였지만, 논란의 여지가 있는 죄인에 대한 告身 還給에는 강력히 반발하였던 것이다. 더불어 告身 還給 대상 및 배제 사유가 국왕 별로 일정치 않고 가변적이었던 점과, 國初에 비해 告身 還給 수혜자가 폭증하였던 점 역시 비판론이 등장하게 된 요인이었다.

V. 결론

告身の 追奪 및 還給 조치는, 告身이 단순히 관원에게 벼슬을 수여하였다는 증거물 이상의 의미를 지녔다는 측면에서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즉, 告身을 거두거나 되돌려주는 처분은 관원의 자격을 박탈하거나 회복시키는 징계

104) 《成宗實錄》卷20, 성종 3년(1472년) 7월 21일 병진 ②.

105) 《成宗實錄》卷189, 성종 17년(1486년) 3월 10일 을묘 ②, “… (전략) … 其三曰謹刑法: 夫法者, 人主所以受於天, 不可以私意輕重低昂之也. 是故我喜可抑, 我忿可窒, 而法不可枉. … (중략) … 法一亂, 則雖聖人, 何能善治? … (중략) … 今遇災而懼, 誕布德音, 有事干國家者, 不在原例. 而任士洪以近臣, 交結朋黨, 濁亂朝政, 王法所不赦; 而特給告身, 復齒朝著. 劉從生市井一小民也, 直以醜詆一二卿相, 而獨不免, 是何赦令不信而刑法之不衷也? … (후략) ….”

106) 《成宗實錄》卷283, 성종 24년(1493년) 10월 27일 무자 ⑤.

와 사면행위의 일환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한편 亡者에 대한 告身 追奪·還給 논의 사례를 분석하면, 관원 및 그 유가족의 명예와 실질적인 혜택과도 상당한 관련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告身 追奪은 奴婢訟事·贓汚·綱常·官員 및 宗親의 殺人·誣告 등 관원의 다양한 범죄 및 고의적인 공무상 범죄인 私罪에 대해 이루어졌지만, 드물게는 공무상 착오로 인한 公罪에 대해서도 追奪된 예외를 발견할 수 있다. 告身の 追奪·還給의 최종적인 결정권은 국왕에게 있었지만, 臺諫의 언론헌동도 한 몫을 담당하였다.

다만 功臣·宗親 등 신분상의 특별한 지위 내지 범행 시점의 문제, 변방 근무와 같은 직책 특수성을 고려하여 告身을 追奪하지 않는 예외도 존재하였다. 관원의 아내의 爵牒은 남편인 관원의 신분에 종속되었지만, 아내의 죄에 관원이 연루되어 告身이 거되지진 않았다.

告身 還給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告身을 追奪한 인원의 명단을 작성하여 보고하도록 하였으므로 정례적인 告身 還給이 존재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告身이 거뒀던 관원의 絃用 기한이 2년이었음을 감안하면, 정례적인 告身 還給 기한 역시 이에 준하였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한편 사면에 의한 還給은 대체로 왕실의 각종 경조사·자연재해 등을 맞아 실시한 사면의 한 종류로 이루어졌다.

대규모 告身 還給에 대해서는 治者の 仁德을 드러내며 유교적 道學君主로서의 도리를 다한다는 점에서는 명분상 큰 무리는 없었으나, 그러한 대응방식에 대해 敎正的 차원에서의 비판도 제기되었다. 과도한 면이 없잖아 있던 告身 還給과 관련하여 贓汚·綱常罪와 같은 重罪에 대해서라도 告身 還給 대상에서 배제시키고자 한 일련의 논의들은 바로 이러한 우려에서 비롯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告身 追奪·還給 사례의 방대한 분량을 고려하여, 본 논문에서는 건국 초부터 성종조까지의 기록만을 다루었다. 연구범위를 조선 초기로 한정하는 것은 현실적인 선택이기는 했지만, 조선 후기 실록 기록은 물론이거니와 《續大典》부터 《大典通編》·《大典會通》에 고루 告身 追奪·還給과 관

련된 규정을 발견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한계가 분명하다. 다만 告身에 대한 연구가 지금도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이는 앞으로의 과제로 남겨 두는 바이다.

■ 참고문헌

1. 사료

《經國大典》, 서울대학교 규장각, 1997, 영인본.

《新唐書》, 北京: 中華書局, 1975.

《大明律講解》, 서울대학교 규장각, 2001, 영인본.

《朝鮮王朝實錄》, 《太祖實錄》·《定宗實錄》·《太宗實錄》·《世宗實錄》·《文宗實錄》·《端宗實錄》·《世祖實錄》·《睿宗實錄》·《成宗實錄》;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 데이터베이스 <http://sillok.history.go.kr/>.

2. 단행본

서정민, 『세종, 부패사건에 휘말리다 - 조말생 뇌물사건의 재구성』, 살림, 2008.

장병인, 『조선전기 혼인제와 성차별』, 일지사, 1997.

정금식·田中俊光·김영석, 『譯註 經國大典註解』, 한국법제연구원, 2009.

3. 논문

김종명, 「세조의 불교관과 치국책」, 『한국불교학』 58호, 한국불교학회, 2010. 11.

서정민, 「朝鮮初期 官吏의 汚職犯罪에 관한 研究 : 贓汚罪에 대한 논의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석사학위논문, 2004. 2, 10~14면.

신소연, 「高麗後期 田民辨整 研究」, 서울대학교 대학원 교육학박사학위논문, 2015. 2.

심영환, 「高麗 景宗元年(975) 金傳告身 分析」, 『서지학보』 제31호, 한국서지학회, 2007. 12.

_____, 「古代 東아시아 任命文書의 性格」, 『泰東古典研究』 제35집, 한림대학교 태동고전연구소, 2015. 12.

안준희, 「朝鮮初期 太宗의 執權過程과 趙思義의 亂」,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사학과 석사학위논문, 1993. 2.

유성국, 「유교적 전통사회의 사면제도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법학박사학위논문, 1997. 2.

유승희, 「조선후기 형사법상의 젠더(gender) 인식과 여성 범죄의 실태」, 『조선시대사학보』 53집, 조선시대사학회, 2010. 6.

이상호, 「태종대 가뭄 대처 양상에 드러난 유학적 사유 : 『태종실록』의 가뭄 관련 기사와 재이관을 중심으로」, 『국학연구』 23호, 한국국학진흥원, 2013. 12.

이정주, 『世祖代 후반기의 불교적祥瑞와 恩典』, 『민족문화연구』 44호,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2006. 6.

조운선, 『英祖代 남형·혹형 폐지 과정의 실태와 欽恤策에 대한 평가』, 『조선시대사학보』 48, 조선시대사학회, 2009. 3.

4. 사진자료

왕실도서관 장서각 디지털 아카이브 데이터베이스(<http://yoksa.aks.ac.kr/jsp/bb/VolView.jsp?mode=&page=&fcs=f&cd=ba1225&gb=1&bb10no=B000000008&bb20no=B000000008T&keywords=&rowcount=10>)

〈Abstract〉

The Study on the Deprivation and Return of the Gosin in the Early Joseon Dynasty

Lee, Seung Hyeon*

Gosin, certificates of appointment for the civil and military officials in the early Joseon Dynasty, had been related to the process of punishing or forgiving officials by depriving or returning Gosin. When looking back to the Chinese-Tang dynasty, there were rules about depriving Gosin in 《Dang-ryulsoui(唐律疏議)》·《Dang-yukjeon(唐六典)》. In Ming Dynasty, [Munmukwan-beomsajoe(文武官犯私罪)] clause in the 《Daemyeongryul(大明律)》 had expressed clearly that Gosin of the guilty officials must be taken away, depending on their nature of crimes. This legal system continued to the 《Gyeong-gukdaejeon(經國大典)》, early Joseon's code. According to the record of 《Annals of the Joseon Dynasty(朝鮮王朝實錄)》, Joseon Dynasty compared the kinds of crime and appropriateness of punishment and deprived Gosin. Therefore, it is proper to consider that depriving or returning Gosin as a disciplinary measure or amnesty for guilty officials.

Depriving Gosin was punishment for officials' various crimes or misconducts. Lawsuit about slavery, bribery, sin about the whole duty of man in Confucian society, killing by severe punishment, false accusation; these were typical reasons of depriving Gosin. Despite the ban of 《Daemyeongryul》, officials

* Master of law, Seoul National University

who made mistakes from public services seldomly suffered deprivation. Vassals of merit, kindred of the king, military officers in the outer area, however, escaped from deprivation. Moreover, crimes before amnesty, husband of the female criminal were also subject to the exemption.

Periodic returning of the Gosin probably happened in early Joseon dynasty, as list of deprivation was regularly reported to the king. Although there were a few of exceptions, returning of Gosin might be generally enforced within 2 years, considering the 2-year-term of reappointment legalized in *Gyeong-gukdaejeon*. Returning of the Gosin by remission was held in celebration or funeral of the royal families. As it were an agrarian society, Joseon Dynasty often returned the Gosin response to the natural disasters such as drought, monsoon, etc.

Both depriving and returning of the Gosin was discussed with king and his officials, and finally decided by the king. Dae-gan(臺諫), the official adviser of the kingdom, also argued against false depriving or returning of the Gosin. Dead officials who had been deprived Gosin in his lifetime, could get back them. On the other hand, the decedent could be taken his certificates after his death with every regard to his nature of a crime.

Even though the number of reports about depriving Gosin increased as time passes, occasional returning of the Gosin also caused lots of beneficiaries. Tradition about calamity and tolerant punishment in confucianism made monarchs to give back guilty officials' Gosin. Some criticisms in those eras usually focused on disability of strict law enforcement due to the returning of Gosin. This shows that returning of Gosin was done under constant state of tension between political harmony and strict order of law.

[Key Words] Gosin(告身), Deprivation, Return, Disciplinary Action, Remission,
Accessory Penalty, Penalty of Honor

